

### 1. 개요

- 일시: 2020. 3. 24(화) ~ 4. 1(수) 기간 중 실시
- 서면제출: 위원 17명 (농어촌분과위 재적인원 총 19명 중), 관계부처
- 주요 내용
  - 【의결사항】 2020년 농특위 농어촌분과 운영계획
  - 【보고】
    - ① (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)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
    - ② (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)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
  - 【검토】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

### 2. 서면회의의 결과

#### ① 의결사항: 2020년 농특위 농어촌분과 운영계획

- 결과 : 원안 가결(서면의결서 제출 위원 17명 전원 찬성)
- 주요 의견
  - 농어업분과의 <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> 및 본위원회(2019.12.03.) 의결과제와의 연계 강화 필요(구자인 위원)
  - 농정틀 전환의 중요한 시점으로 국민, 지자체, 정부관계자 등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, 이에 대해 전략적 접근 필요(박주영 위원)
  -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면 공청회나 회의 진행이 어려울 시 영상회의 등 대안 마련 필요(배재수 위원)

-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해 난개발 문제가 농촌다움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확산 방안 모색(성주인 위원)
- 국가-시민사회-농어민·농어촌 주민간 사회협약이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출과정이 세심히 설계되어야 함(안성민 위원)
- 사무국 기능강화 및 분과위원회 임기 종료 도래에 따라 과제 수행에 실질적 역할 담당할 수 있는 새 위원구성의 내실화 제안(유정규 위원)
- 살고 싶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관련 농어촌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어촌 해양 쓰레기 대책 마련이 시급(이유진 위원)

→ 주요 의견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협의하여 반영

## ② 보고 ①: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

### □ 주요 의견

- 자치분권, 균형발전, 민관협치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동향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를 도출(구자인 위원)
- 지속가능성 범위와 수준, 즉 도달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과 과제를 도출(김영란 위원)
- 농촌 빈집,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규제 개선방안 및 농촌 관광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다루었으면 함(박주영 위원)
- 농어촌정책 전환 선언 준비, 중앙-광역-기초, 행정-민간 간 역할분담, 농촌계획협약제도 단계적 추진방안 강구 등을 다뤄야 함(유정규 위원)
- 지역 인구감소, 산업구조 개편 등 농어촌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중장기적 반영 가능한 효과적 연구 수행 필요(이승우 위원)

- 유럽 그린딜과 미국의 그린뉴딜에서 농업분야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했으면 함(이유진 위원)
- 연구를 통해 공익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농업 여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(이은영 위원)

→ 현재 연구용역 공고 중으로 용역기관 선정 후, 소분과 운영과 긴밀한 연계 아래 농어촌분과위원 의견 반영하여 정책연구 추진

### ③ 보고 ②: 의결사항 이행관리계획

#### □ 주요 의견

- 지방자치단체 업무분장 및 조직체계 전수조사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현재의 직렬별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점 확인 필요(구자인 위원)
- 이행과제 추진관련 관계부처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, 지역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참여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(김영란 위원)
- 현재 협의 중인 사항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할 필요(박주영 위원)
- 이행계획의 진척과 변경 사항에 대해 정부부처와 농어촌분과위원 간 함께 토론하고 개선하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(배재수 위원)
- 지역여건의 다양성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모델의 통합 운영을 일률적으로 유도하는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(성주인 위원)
- 지자체 농정혁신 위해 자율과 유인(incentive)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며,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의 활용을 제안(유정규 위원)
- 계획 이행과정에서의 점검과 이행에 대한 성과홍보가 함께 이루어져 변화되는 내용을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(이은영 위원)

-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보조(예산)는 경영지도와 무관하게 조합 경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(최무열 위원)

**<4-3 민관협치형 산림경영체계 지원(산림청) 중>**

□ 추진 시 협조사항

- (기재부) 민관 협치 산림경영 모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
  - 유관기관 및 협·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필요
  - \* **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보조(예산) 증액**, 임업인 협·단체 각종 지원 규모 확대

※ 산림TF에 공유하여 검토 및 반영 추진

→ 농어촌분과위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“이행과제별 관계부처 추진계획” 보완 및 개선 추진

※ 다만, ‘19.12.5일 의결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반영 불가

→ 이행과정에서 정부부처와 분과위원간 토론 및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행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

**4 검토 ②: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**

□ 의원 제출의견

- 기존 정책에 누락된 부분, 기존 정책 중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, 기존 정책 중 농어촌의 실정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농특위 안을 마련(유정규 위원)
-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영농조합이나 작목반, 일반 경제활동 주체들 까지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어촌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도록 유도(성주인 위원)
- 농어업·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유지를 반영한 농어촌 사회적경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(배재수 위원)
- 사회적경제 활동가 교육기반 구축,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의 현실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완(정민철 위원)

-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이 농업과 연계된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및 지원 내용을 포함(이은영 위원)
-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에서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, 재생가능에너지, 집수리 단열 개선 분야 등 반영 필요(이유진 위원)

#### □ [참고] 부처 제출의견

- 「사회적경제 기본법(안)」에 「농어업경영체법(안)」 제27조의7에 따른 ‘사회적농어업경영체’ 포함 → 안건에서 삭제 제안(기재부)
  - 사회적경제기본법(안)\*에 대한 정부 의견조회, 국회와의 협의 등 입법 추진 시 논의된 바 없음. 추후,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 추진
- 추진과제와 제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 필요(농식품부)
  - 농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의 필요성, 제안한 내용\*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검토
    - \* 시민단체, 종교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이해 촉진활동방안, 조직간 연대 및 네트워킹을 통한 경제활동, 주민 공동체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방안, 새로운 사회적경제모델 개발, 지역중심의 민관협치형 지역개발 및 관리방식 전환, 법적 근거 마련 등
  - 농축수협의 상호금융계정 개방, 지역농협의 출자, 농어촌 사회적경제 기금설립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 충분한 검토 및 협의 추진

→ 4월 중 검토회의를 통해 집중적 논의를 거쳐 수정하고 안건을 마련, 농어촌분과위원회 논의 이후 5월 본회의 안건 제출 준비

#### ⑤ 기타 의견

-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인식 기회 마련 필요(이은영 위원)

- 농어촌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전반을 분석 및 평가하고 연구 과제와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, ‘연구를 설계하는 연구’ 추진(이유진 위원)
- 농어촌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.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들에 대한 논의 강화 필요(강정현 위원)
- 농어촌분과위원회 소분과별 운영방향 제시

### 3. 향후 주요계획

- 소분과별 운영계획수립(구자인, 유정규), 총괄계획조정(황수철)(4월 초)
- “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” 연구용역 착수(4월 말)
- 제5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개최(5월)
- “(안전)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” 본위원회 상정(5월)